

< 수시 공시 >

2010. 06. 07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 : 신영아이젠30 증권 투자신탁(채권혼합)
2. 공시 사유 :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
3. 주요 변경 내용
 - 1) 투자대상의 구체화
: 주식, 집합투자증권, 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 합산하여 자산총액의 30% 이하로 변경
 - 2)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수익률 등 업데이트
4. 변경시행일 : 2010.06.07.(월)
5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,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